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 (2022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 국 모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110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5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(금)

2. 제출사유

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지원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(안 제11조)
- 나.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3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규정인 마포구 체육회와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(안 제11조), 보조금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. (안 제13조)
- 이 조례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기존 “할 수 있다”에서 “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였음. 이러한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등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함은 물론, 지방체육회의 역할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.
-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, 개정안 제13조 역시 인용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법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반면, 이와 같이 지방체육회의 활동이 공익적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체육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되어야 하므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,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밀한 지도·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한편,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체육분야 통계¹⁾에 의하면 성폭력, 폭행, 인권 침해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. 따라서 체육계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〈수정안 예시〉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	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이에 덧붙여, 성폭력 대책 등에 대한 여성 체육인의 의견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집행기관은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많은 여성 체육인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, 아울러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동 협의회에 체육 관련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.

1) 지난 2년간 체육계 성폭력, 폭행 등 범죄행위로 체육지도자 2,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(338명), 사기(295명), 폭행(203명), 아동학대(29명), 기타 등이라고 발표 (2021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‘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회’ 제1차 회의)

【 참고자료 】

【 국민체육진흥법 】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20. 2. 4., 2020. 12. 8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, 2022. 2. 3.>

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】

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